

미국 지방법원 – 캘리포니아주 중부 지구

귀하가 미국에서 2000년 1월 1일에서 2007년 8월 1일 사이에
대한항공 또는 아시아나 항공의 여객항공권을 구입하셨다면

집단소송 화해가 귀하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담당 법원이 귀하의 법적 권리와 선택적 권리행사를 요약한 이 공지를 승인했습니다. 이 공지를 주의 깊게 읽어주십시오.
- (주)대한항공(이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주)(이하 “아시아나”)(총칭하여 “피고들”)이 미국과 대한민국 간 노선의 여객 항공권 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와 관련하여, 대한항공과의 집단소송 화해가 제안되었습니다.
- 2000년 1월 1일에서 2007년 8월 1일 사이에 적격의 항공권을 구입하셨다면, 귀하는 화해의 일환으로 환불 및 미래 여객항공 여행에 사용하실 수 있는 쿠폰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권리 및 선택 내용 요약:

귀하의 선택		마감일: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음	귀하는 이 소송의 법적 청구에 기반하여 대한항공에 대한 일체의 다른 소송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귀하는 이 화해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청구서 증명은 www.KoreanAirPassengerCases.com 에서 제공됩니다. 8번 질문을 참조하십시오.	해당 사항 없음
청구서 제출	이는 화해의 혜택을 받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7번 질문을 참조하십시오.	2013년 12월 31일 까지의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거나 그 때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함
집단 소송에서 제외	소송 집단에서 자신을 제외시킵니다. 서면으로 소송 집단에서의 탈퇴를 요청하고, 자신의 비용 부담하에 독자적으로 소송 청구를 위해 대한항공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10번, 11번 질문을 참조하십시오.	2013년 10월 25일 또는 그 이전의 우체국 소인이 찍혀야 함
화해에 이의 제기	화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제시합니다. 자신을 제외시키지 않는 경우, 귀하는 독자적으로 또는 선임한 변호인을 통해 화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시의 적절하게 이의 제기를 제출하는 경우, 공정성 심리에 참석하여 제안된 화해에 대한 이의 제기에 관해 법원에서 발언할 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2번 질문을 참조하십시오.	법원에 제출하고 2013년 10월 25일 또는 그 이전의 우체국 소인이 찍혀야 함
공정성 심리에 참석	공정성 심리에 참석합니다. 공정성 심리는 법원이 제안된 화해를 고려하고 일체의 이의 제기를 듣기 위해 열립니다. 17번, 18번 질문을 참조하십시오.	2013년 12월 2일 오전 10시

상기 권리와 선택 사항
- 및 선택적 권리 행사 마감일-이
본 공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본 공지의 목차

기본 정보.....	1
1. 본 소송은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1
2. 이 소송은 왜 집단소송입니까?.....	1
3. 왜 화해를 진행합니까?.....	1
4. 누가 집단 구성원이 됩니까?.....	1
5. 제가 화해에 포함되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
화해의 혜택 – 귀하가 얻게 되는 것.....	2
6. 본 화해가 무엇을 제공합니까?.....	2
7. 화해의 혜택을 받기 위한 청구서는 어떻게 제출합니까?.....	2
집단 소송에 계류.....	2
8. 일체의 행동도 취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2
9. 소송 집단에 남는 경우, 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청구를 포기하게 됩니까?.....	2
집단 소송에서 제외.....	3
10. 이 소송 집단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3
11. 집단에서 제 자신을 어떻게 제외시킵니까?.....	3
화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 제시.....	3
12. 화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3
13. 화해에 대한 이의 제기과 화해에서 제 자신을 제외시키는 것 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4
귀하를 대변하는 변호인.....	5
14. 이 사건에서 저를 대변하는 변호인을 갖게 됩니까?.....	5
15. 제가 변호인을 선임해야 합니까?.....	5
법원의 최종 승인 심리.....	5
16. 법원이 언제, 어디에서 화해의 최종 승인 여부를 판결할 것입니까?.....	5
17. 공정성 심리에 참석해야 합니까?.....	5
18. 공정성 심리에서 발언할 수 있습니까?.....	5
추가 정보 얻기.....	6
19. 어디에서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까?.....	6

기본 정보

1. 본 소송은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피고들”)이 2000년 1월 1일부터 2007년 8월 1일까지 미연방 반독점법을 위반하여 미국과 대한민국 간 노선의 여객 항공권 가격을 담합했다고 주장하는 일련의 사람들(“원고들”)에 의해 피고들을 대상으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본 소송에서 주장하는 담합에는 여객 항공권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게 책정하는 데 동의한 기간 동안 두 피고 사이에 미국 및 기타 지역에서 행한 회의, 대화 및 의사소통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소송과는 무관하게,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별도의 소송에서, 피고들은 형사상의 반독점 위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과징금을 납부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피고들은 소송의 청구를 부인하고 자신들에게 유효한 법적, 사실적 변호의 여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아시아나는 2011년 이 사건을 화해하였고 법원이 화해에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제 대한항공은 소송을 지속하는 것과 관련하여 비용과 결과의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이 사건을 화해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2. 이 소송은 왜 집단소송입니까?

집단소송에서는 “소송 당사자 대표”라 불리는 한 명 이상의 개인이 유사한 청구를 가진 개인들을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개인들을 함께 “집단” 또는 “집단 구성원”이라 합니다.

여기서 원고와 대한항공은 제안된 화해에 도달했습니다. 법원은 예비적으로 화해와 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공지를 승인했습니다. 법원이 화해에 대한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공정성 심리가 개최될 것입니다. (16번 질문을 참조하십시오.)

3. 왜 화해를 진행합니까?

화해는 협상 후 원고와 피고 간의 합의입니다. 화해는 해당 피고에 대한 소송을 종료하나, 법원이 원고 또는 피고에게 유리하게 판결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화해는 양 당사자들이 재판의 비용과 위험을 피하고 모든 관련 당사자들에게 최선인 공평하고 공정한 최종 해결책을 채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집단을 대변하는 변호인들(“집단소송 변호인”)과 대한항공은 소송에서 제기된 이슈 및 가능한 화해 조건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협상을 벌였습니다. 대한항공은 이 소송의 청구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집단소송 변호인은 화해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적절하고 집단에 최선이라고 믿습니다.

4. 누가 집단 구성원이 됩니까?

귀하가 아시아나 항공 또는 대한항공의 여객 항공권을 적어도 1매 구입하셨다면, 집단 구성원으로 포함됩니다. 항공권 구입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미국에서 구입,
- 미국발 한국행 노선 또는 한국발 미국행 노선, 그리고
- 2000년 1월 1일에서 2007년 8월 1일 사이(“집단 기간”)에 구입.

사업체와 개인들 모두 집단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집단에 포함되지 않는 다수의 개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들과 그 전임자, 자회사 및 계열사(그러나 여행사는 “계열사”에 포함되지 않음), 그리고
- 모든 정부기관들.

5. 제가 화해에 포함되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귀하가 상기 집단 구성원 정의를 충족시키고 자신을 본 집단소송에서 제외시키지 않는다면, 귀하는 집단 구성원이 되고 화해에 포함될 것입니다.

화해의 혜택 — 귀하가 얻게 되는 것

6. 본 화해가 무엇을 제공합니까?

9번 질문에 설명된 청구 면제의 대가로, 대한항공이 집단을 위해 총 \$65,000,000달러를 지급할 것입니다. 대한항공은 현금으로 \$39,000,000달러를, 추후 여행에 사용할 수 있는 여행 쿠폰으로 \$26,000,000달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금으로 \$11,000,000 달러를, 추후 여행에 사용할 수 있는 쿠폰으로 \$10,000,000달러를 지급한 아시아나의 이전 화해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법원이 승인한 변호인비와 경비를 차감한 현금과 쿠폰은 본 소송이 종료될 때 집단 구성원들에게 지급될 것입니다. 현금과 각 항공사의 비행에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은 시의 적절하게 청구서를 제출한 집단 구성원들에게 달러로 적격 구입된 항공권의 총 금액을 기준으로 비례배분으로 분배될 것입니다.

시카고 청산위원회(Chicago Clearing Corporation)는 법원에 의해 이 화해의 쿠폰 부분을 관리하도록 지명되었으며 집단 구성원들을 위해 쿠폰 양도 또는 교환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 화해에 관한 세부사항과 청구 절차는 화해 관리인의 웹사이트 www.KoreanAirPassengerCases.com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7. 화해의 혜택을 받기 위한 청구서는 어떻게 제출합니까?

청구서는 2013년 8월 2일부터 배포될 것이며 법원이 본 화해를 승인하여 최종화된 이후 처리될 것입니다. 귀하는 웹사이트 www.KoreanAirPassengerCases.com에서 온라인 상으로 직접 청구서를 제출하고, 여기에서 청구서 사본을 다운로드, 인쇄 및 우편 전송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본인에게 청구서를 전송해 주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를 제출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2000년 1월 1일에서 2007년 8월 1일 사이 구입하신 아시아나와 대한항공편 여객 항공권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귀하께서 집단에서 자신을 제외시키는 경우, 청구서를 제출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청구서를 작성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청구 관리인에게 다음의 주소로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도록 우송해야 합니다:

Korean Air Passenger Antitrust Litigation
P.O. Box 2436
Faribault, MN 55021

집단 소송에 계류

8. 일체의 행동도 취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귀하께서 지금 현재 일체의 행동도 취하지 않는 경우, 집단 구성원으로 남게 될 것이며, 화해가 승인되는 경우 나중에 청구 증명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이의 구속을 받게 됩니다.

화해가 승인되는 경우, 대한항공에 대한 청구를 완전 면제해 주게 되어, 이 소송의 청구와 관련하여 대한항공에 절대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화해 기금의 일부를 받으시려면, 청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9. 소송 집단에 남는 경우, 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청구를 포기하게 됩니까?

간략히 말해, 집단에 남는 경우, 이 소송에서 제기한 청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유로든 대한항공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집단에 남고 화해가 효력을 발휘하는 경우, 귀하는 다음과 같은 “면책자”로 간주되어 대한항공을 모든 “면책된 청구”로부터 면제시키게 될 것입니다:

“면책된 청구”란 일체의 면책자들 또는 그 중 한 개인이, 기존에 알려졌는지에 관계없이, 피면책자들에 대해 가졌거나, 지금 가지고 있거나, 이후 가질 수 있거나, 가질 것이거나, 갖게 될 수 있으며, 집단 기간 동안 화해에 명시된 여객 항공 운송의 가격담합 혐의로 인해, 이로부터 발생하거나, 이로 인해 결과를 초래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하여 집단차원에서 집단을 대리하여 본 소송에서 주장했거나 주장할 수 있는 일체의 모든 손해배상 청구, 요구, 고소, 소송 및 소송 사유(본질 상 집단, 개인 또는 기타 여부에 관계없이)를 의미합니다.

“피면책자”란 대한항공, 그의 과거 및 현재 임원, 이사, 직원, 대리인, 변호인, 피고용인, 대표, 모회사, 자회사, 계열사, 전임자, 승계자, 상속자, 상속집행자, 관재인 및 이들 각 당사자의 양수인을 의미합니다. 이 정의에 사용된 “계열사”란 피면책자를 지배하거나, 피면책자의 지배를 받거나, 피면책자의 공동 지배를 받고 있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피면책자”에는 아시아나, 아시아나의 일체의 과거 또는 현재 임원, 직원 또는 이들을 대신하는 대리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국이나 미국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구입한 여객 항공권에 대한 일체의 청구 또는 이 소송에서 주장한 청구와 관련되지 않은 일체의 청구는 이러한 면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집단 소송에서 제외

10. 이 소송 집단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집단에 남아 있기를 원하지 않고 동일한 청구와 관련하여 단독으로 대한항공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유지하고 싶은 경우, 집단에서 탈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집단 소송에서 제외라고 합니다. 자신을 제외시킴으로써, 자신의 비용 부담하에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자신을 제외시킨 다른 사람들과 합류하여 이 소송의 청구와 관련하여 대한항공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자신을 집단에서 제외시키는 경우, 본 화해로부터 지급금을 받을 수 없으며 화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1. 집단에서 제 자신을 어떻게 제외시킵니까?

집단에서 자신을 제외시키고 싶은 경우, 다음 정보를 모두 포함하는 편지를 보내야 합니다:

- 1) 귀하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 2) 귀하 또는 귀하의 사업체가 사용하는 모든 상호 또는 업체명 및 주소,
- 3) 집단에서 자신을 제외시키고 싶다는 진술,
- 4)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집단 기간 동안 미국발 한국행 또는 한국발 미국행 여객항공 여행을 위해 귀하께서 미국에서 구입한 모든 항공권의 날짜(들)와 가격(들), 그리고
- 5) 귀하의 서명.

모든 제외 서한은 다음 주소로 일종 우편으로 우송하고 **2013년 10월 25일** 또는 그 이전의 소인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Korean Air Passenger Antitrust Litigation
P.O. Box 2436
Faribault, MN 55021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자신을 제외시킬 수 없습니다.

화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 제시

12. 화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예. 귀하께서 일체의 화해 내용에 반대하는 경우, 서면 응답을 통해 화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이를 법원에 제출하고 화해 당사자들에 송달해야 합니다. 또한 화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서면 응답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 1) 귀하의 성명 및 주거 또는 사업체 주소,
- 2) 귀하께서 2000년 1월 1일에서 2007년 8월 1일 사이 대한항공 또는 아시아나 항공 편으로 미국발 한국행 또는 한국발 미국행 여객항공 여행을 위한 항공권을 미국에서 구입했다는 위증에 대한 책임하에 서명한 진술서, 그리고
- 3) 의견 제시 또는 이의 제기의 각 이유 또는 근거 및 법원이 고려해 주기를 원하는 일체의 증빙 서류.

이의 제기는 늦어도 **2013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주소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Clerk of Court
U.S. District Court,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312 North Spring Street
Los Angeles, CA 90012

이의 제기에는 본 사건 이름과 번호를 기록해야 합니다(In Re Korean Air Lines Co., Ltd. Antitrust Litigation, MDL No. 07-01891, Master File No. CV 07-05107 SJO (AGRx)).

귀하의 서류를 적절히 제출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제출에 관한 법원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http://www.cacd.uscourts.gov/court-procedures/local-rules>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응답과 일체의 증빙 서류 사본들은 또한 다음 주소들로 각각 우송하고 늦어도 **2013년 10월 25일자** 소인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Counsel for Class	Settlement Administrator	Counsel for Defendant Korean Air
Susan G. Kupfer Glancy Binkow & Goldberg LLP One Embarcadero Center, Suite 760 San Francisco, CA 94111 Jeff S. Westerman Westerman Law Group 1925 Century Park East, Suite 2100 Los Angeles, CA 90067 Marc M. Seltzer Susman Godfrey L.L.P. 1901 Avenue Of The Stars, Suite 950 Los Angeles, CA 90067	Korean Air Passenger Antitrust Litigation P.O. Box 2436 Faribault, MN 55021	Donald L. Morrow Panteha Abdollahi Paul Hastings LLP 695 Town Center Dr., 17th Floor Costa Mesa, CA 92626

귀하 또는 변호인이 공정성 심리에 출두하고 싶은 경우, 귀하의 이의 제기에 출두 의향서를 포함시켜야 합니다(18번 질문을 참조하십시오).

13. 화해에 대한 이의 제기와 화해에서 제 자신을 제외시키는 것 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귀하가 집단 구성원으로 남기를 원하나 일부 화해 내용에 반대하는 경우, 화해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의 제기를 통해 귀하의 견해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외는 귀하가 더 이상 집단 구성원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일단 제외되면, 화해가 귀하에게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일체의 화해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잃게 됩니다.

귀하를 대변하는 변호인

14. 이 사건에서 저를 대변하는 변호인을 갖게 됩니까?

예. 법원이 귀하와 다른 집단 구성원들을 대변하도록 다음 변호인들과 로펌을 지명했습니다:

Counsel for Class		
Susan G. Kupfer Glancy Binkow & Goldberg LLP One Embarcadero Center, Suite 760 San Francisco, CA 94111	Jeff S. Westerman Westerman Law Group 1925 Century Park East, Suite 2100 Los Angeles, CA 90067	Marc M. Seltzer Susman Godfrey L.L.P. 1901 Avenue Of The Stars, Suite 950 Los Angeles, CA 90067

이들은 집단소송 변호인이라 합니다. 귀하께서 이 변호인들에 개인적으로 변호인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변호인들이 본 화해의 최종 승인 시에 법원에 변호인 비용 재정 승인을 요청할 것입니다. 집단소송 변호인은 법원에 a) 이미 발생한 일부 비용과 경비를 상환해 주고, b) 화해 기금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변호인 비용을 지급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15. 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합니까?

원하시는 경우, 자신의 변호인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해당 변호인 비용과 경비를 책임져야 합니다. 변호인이 자신을 대변하거나 법원에 출두하기를 원하는 경우, 귀하는 출두 의향서를 제출해야 합니다(18번 질문을 참조하십시오).

법원의 최종 승인 심리

16. 법원이 언제, 어디에서 화해의 최종 승인 여부를 판결할 것입니까?

법원은 **2013년 12월 2일, 오전 10시**에 312 North Spring Street, Los Angeles, CA 90012 소재 미국 법원 제1호실 미국 지방법원 판사 S. James Otero의 법정에서 공정성 심리를 개최할 것입니다. 법원은 화해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적절한지를 고려할 것입니다. 공정성 심리에서, 법원은 화해의 승인 여부, 변호인 비용 재정, 소송 당사자 대표 재정, 소송 비용과 경비의 신청을 결정할 것입니다. 의견 제시 또는 이의 제기를 받은 경우, 법원은 이 때 이를 고려할 것입니다.

17. 공정성 심리에 참석해야 합니까?

아니요. 집단소송 변호인이 집단 구성원을 대신하여 법원의 질문에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이의 제기 또는 의견 제시를 적절히 우송한 경우에도,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 제기를 마감일까지 제출했고 소인이 찍힌 경우, 법원이 이를 고려할 것입니다.

18. 공정성 심리에서 발언할 수 있습니까?

예. 귀하는 공정성 심리에서 발언하거나 자신의 변호인을 고용하여 대신 발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원하는 경우, 법원에 “출두 의향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본 사건 이름과 번호를 기록해야 합니다(In Re Korean Air Lines Co., Ltd. Antitrust Litigation, MDL No. 07-01891, Master File No. CV 07-05107 SJO (AGRx)).

귀하의 요청에는 또한 공정성 심리에 출두하고자 하는 의향을 언급해야 합니다. 이에 귀하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서명뿐만 아니라 귀하의 변호인이 출두하는 경우 변호인의 이름과 주소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본 화해 집단에서의 제의를 요청한 경우, 공정성 심리에서 발언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출두 의향서는 늦어도 **2013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주소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Clerk of Court
U.S. District Court,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312 North Spring Street
Los Angeles, CA 90012

출두 의향서 사본들은 늦어도 **2013년 10월 25일** 소인이 찍히도록, 다음 주소들로 각각 우송해야 합니다:

Counsel for Class		Counsel for Defendant Korean Air
Susan G. Kupfer Glancy Binkow & Goldberg LLP One Embarcadero Center, Suite 760 San Francisco, CA 94111	Marc M. Seltzer Susman Godfrey L.L.P. 1901 Avenue Of The Stars, Suite 950 Los Angeles, CA 90067	Donald L. Morrow Panteha Abdollahi Paul Hastings LLP 695 Town Center Dr., 17th Floor Costa Mesa, CA 92626
Jeff S. Westerman Westerman Law Group 1925 Century Park East, Suite 2100 Los Angeles, CA 90067		

추가 정보 얻기

19. 어디에서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까?

추가 정보는 이 소송에서 법원에 제출한 화해 합의서와 기타 법률 서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귀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부 지구 지방법원 서기관실(312 North Spring Street, Los Angeles, CA 90012 소재)에서 정규 근무 시간 동안 언제든지 이 법률 서류들을 열람, 복사할 수 있습니다. 화해의 최종 승인에 관한 집단소송 변호인의 신청, 비용과 경비, 변호인 비용의 재정에 관한 신청 등과 같은 일부 서류들은 또한 화해 관리인 웹사이트(www.KoreanAirPassengerCases.com)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소송 또는 공지에 관한 일체의 질문이 있으시면:

- 화해 관리인 웹사이트(www.KoreanAirPassengerCases.com)를 방문하시거나
- 우편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Korean Air Passenger Antitrust Litigation, P.O. Box 2436, Faribault, MN 55021.

독립적인 화해 관리인이 이 화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화해와 관련하여 법원, 서기관실 또는 피고들에 직접 연락하지 마십시오.